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공고)

다음과 같이 당사의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2년 3월 31일(목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6길 28 우일벤처빌딩 2층 본사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2022년 이사 보수지급총액 한도 승인의 건

◎ 이사보수 한도 및 집행내역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비고
한도(원)	2,0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집행내역(원)		339,700,000	381,320,409	
등기 이사수	7	6	8	

제3호 의안 : 2022년 감사 보수지급총액 한도 승인의 건

◎ 감사보수 한도 및 집행내역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비고
한도(원)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집행내역(원)		12,000,000	12,000,000	
등기 감사수	1	1	1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조명수, 사외이사 장정순 임기(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종결일) 만료에 따른 재선임

성명	선임 내역	생년 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 내역	최대 주주와의 관계
조명수	사내 이사	69.10.24	* (현) 에스바이오메딕스 연구소장 * (현) 에스바이오메딕스 사내이사 * (전) 제일약품(주) 수석연구원	없음	없음
장정순	사외 이사	57.07.27	* (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현) 에스바이오메딕스 사외이사 * (전) 대한중양내과학회 회장 * (전) 한국임상암학회 감사	없음	없음

제5호 의안 : 이사 추가 선임의 건

성명	선임 내역	생년 월일	주요약력	회사 와의 거래 내역	최대 주주 와의 관계
홍기동	사내 이사	72.10.20	* (현) 에스바이오메딕스 CFO * (전) 서울저축은행 재경팀 팀장	없음	없음

제6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별첨. 참조)

-전자증권제도 관련 개정내용 반영 外

제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김은희 외 13명 : 32,000주

4.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및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및 위임장(위임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 주총참석장 및 위임장은 공지사항(게시판)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6일

(직인생략)

(주)에스바이오메딕스 대표이사 강세일

(별첨. : 정관 개정 전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p> <p>①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조항은 삭제한다.</p>	<p>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p> <p>④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을 발행한다.</p>	
<p>제8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p> <p>①회사는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p>	<p>제8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p> <p>④회사는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전자증권제도 관련 개정내용 반영 수정
<p>제14조(명의개서대리인)</p> <p>③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제14조(명의개서대리인)</p> <p>③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제15조(주주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p> <p>④제1항에서 제3항은 ~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p>	<p>제15조(주주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p> <p>④본조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삭제한다.</p>	
<p>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발행할 수 있다.</p>	<p>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발행할 수 있다.</p>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총액
<p>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발행할 수 있다.</p>	<p>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④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발행할 수 있다.</p>	
<p>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p> <p>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 제15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p>	<p>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p> <p>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4조 3항, 제15조 4항, 제22조, 제22조의2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전자증권제도 관련 개정내용 반영 수정